

##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의 부대시설”이란 제1호의 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및 부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3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6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개인연습, 경기연

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사람(의무경찰대 대원, 사회복지요원, 해양경비원, 의무소방원 포함)을 말한다.

8.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자로 한다.

11. “단체입장”이란 동일한 단체의 구성원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민체육센터(수영장)의 단체입장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12.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3. “체육활동”이란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체육행사 등을 말한다.

14.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활동 외의 운동회,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15. “휴일”이란 토요일을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 표 1과 같다.

## 제2장 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허가 등

제4조(시설의 개방)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별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개방 체육시설별 이용기간 및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의 종류별 사용료, 이용료, 무료사용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개방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개수·보수 및 증축
2.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예정일 7일(단, 강릉아레나의 경우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1. 국가, 강원도 및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국제경기 및 행사
3.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 허가한다.

1. 국가, 강원도 및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등 행사
7. 그 밖의 행사 및 체육활동 등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가 둘 이상이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자를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전대를 한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조에 의해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제9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

1. 반사회적 및 범죄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될 경우(다만, 농수산물 전시판매,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한다)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거나, 시설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시설의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
4. 사용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사람

제11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허가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설비승인 신청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허가기간 종료될 때까지 철거하고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2항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3장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

제13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요금 등) ① 체육시설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사용요금”이라 한다)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시간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사용요금 전액을 징수한다.

③ 강남축구공원 기숙사, 체력단련장, 사무국 및 종합경기장 용도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에게 전자발권기 및 매표소에서 발권한 이용권을 발부

함으로써 사용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15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② 사용자가 오전부터 오후와 야간까지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체육경기 및 그 밖의 행사는 6퍼센트의 금액을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외의 행사에 관한 관람권은 승인된 금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승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현금 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관람권을 발급하는 경우 초청장 및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의 매출로 하고, 사용료의 정산은 시장이 한다.

제17조(입장권 및 입장료) ① 경기 및 행사를 관람하게 하기 위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강원도·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및 신문·방송사의 출입  
기자
3. 시장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② 입장권의 관리는 사용자가 전담하되 예매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현장 매표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실시한다.

③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남은 입장권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사용자의 입회하에 소각한다.

④ 입장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3의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 및 감면율은 별표 5와 같다. 단, 중복감면에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사항은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부대시설 사용료

2. 제14조에 따른 초과사용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제19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

2.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100분의 90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 사용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100분의 80반환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중단된 때: 중단일 이후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반환(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반환불가)

5. 제5조에 의해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6. 제8조(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의해 사용허가를 취소받은 경우: 반환불가

7. 허가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불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4장 체육시설의 관리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

반에 대한 지도를 위해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관련 국장 및 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체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소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허가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용자
2. 사용허가 기간, 시설 및 내용(목적)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3월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용자
2. 사용허가 기간, 시설 및 내용(목적)

3. 사용허가 사용료 수입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정보를 별도의 프로그램 및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시 위탁방법 및 위탁료의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4조(준용)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사용요금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이용 및 감면 신청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종합운동장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69(교동)	용도실
보조경기장	강릉시 교동 465	
실내종합체육관 (컬링장, 빙상장)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32(교동)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강릉시 수리골길 76(교동)	
국민체육센터(볼링장)	강릉시 남부로 226(노암동)	
국민체육센터(강남체육관)	강릉시 남부로 224(노암동)	스쿼시장
생활체육센터 (배드민턴장, 탁구장, 태권도장, 유도장)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69(교동)	
실내롤러스케이트장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5(교동)	
야외롤러스케이트장	강릉시 입암동 703	
선수 기숙사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5(교동)	
인공암벽장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69(교동)	
풋살장	강릉시 교동 414	
족구장	강릉시 교동 413	
궁도장	강릉시 동해대로 699-7(대전동)	
실내게이트볼장	강릉시 수리골길17번길 22(교동)	
강남축구공원	강릉시 남부로 222(노암동)	기숙사, 체력단련장, 사무국
강북공설운동장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188	
주문진실내체육관	강릉시 주문진읍 학교길 24	
월드구장	강릉시 병산동 643	
야구장	강릉시 병산동 643-1	
강릉아레나	강릉시 수리골길 102(포남동)	
우드볼장	강릉시 입암동 706	
펍트랙	강릉시 포남동 1267-4	

[별표 2]

##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휴무일 (제13조 관련)

### 체육시설 사용시간

구 분	하계 (3월 ~ 10월)	동계 (11월 ~ 다음 해 2월)	비 고
조기	05:00 ~ 08:00	06:00 ~ 09:00	1일이란 오전과 오후를 합한 시간을 말한다
오전	08:00 ~ 12:00	09:00 ~ 12:00	
오후	12:00 ~ 18:00	12:00 ~ 18:00	
야간	18:00 ~ 22:00	18:00 ~ 22:00	

### 그 외 사용시간

시설명	사용시간	비 고
생활체육센터	06:00 ~ 22:00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06:00 ~ 22:00
	볼링장	10:00 ~ 22:00
	강남체육관	09:00 ~ 22:00

### 체육시설 휴관일

시설명	휴관일	비 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볼링장, 강남체육관)	1월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생활체육센터 (탁구장, 배드민턴장, 유도장, 태권도장)	1월1일, 설날, 추석	

[별표 3]

## 체육시설 사용요금 (제14조 관련)

### 종합경기장

(금액 : 원)

구분 \ 분류		사 용 료			운 영 기 준
		1일	오전·오후	조기/야간	
축구경기 (천연잔디)	평일	200,000	-	3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 1게임(2시간)</li> <li>•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li> </ul> </li> <li>• 천연잔디 구장 추가사용 시 사용료 가산(단, 축구경기 제외)</li> <li>• 잔디구장 보호를 위해 사용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최대 4시간 이내 제한</li> </ul> </li> <li>• 일반행사(잔디구장 내)의 경우 잔디보호 매트 의무설치</li> </ul>
	휴일	300,000	-	450,000	
육상경기	평일	40,000	20,000	60,000	
	휴일	50,000	25,000	75,000	
체육활동	평일	130,000	65,000	195,000	
	휴일	190,000	95,000	285,000	
일반행사	평일	200,000	100,000	300,000	
	휴일	250,000	125,000	375,000	

### 강남축구공원

(금액 : 원)

구분 \ 분류		사 용 료			운 영 기 준
		1일	오전·오후	조기/야간	
축구경기 (인조잔디)	평일	70,000	50,000	10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 1게임(2시간)</li> <li>•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li> </ul> </li> </ul>
	휴일	100,000	75,000	150,000	
체육활동	평일	100,000	35,000	70,000	
	휴일	150,000	50,000	86,000	
일반행사	평일	150,000	75,000	225,000	
	휴일	200,000	100,000	300,000	
축구경기 (천연잔디)	평일	200,000	-	300,000	
	휴일	300,000	-	450,000	

### 보조경기장

(금액 : 원)

구분 \ 분류		사 용 료			운 영 기 준
		1일	오전·오후	조기/야간	
축구경기 (천연잔디)	평일	200,000	-	3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 1게임(2시간)</li> <li>•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li> </ul> </li> <li>• 천연잔디 구장 추가사용 시 사용료 가산(단, 축구경기 제외)</li> </ul>
	휴일	300,000	-	450,000	
체육활동	평일	130,000	65,000	195,000	
	휴일	190,000	95,000	285,000	
일반행사	평일	200,000	100,000	300,000	
	휴일	250,000	125,000	375,000	



## 강북공설운동장

(금액 : 원)

구분 \ 분류		사 용 료			운 영 기 준
		1일	오전·오후	조기/야간	
축구경기 (인조잔디)	평일	70,000	35,000	105,000	• 1회 1게임(2시간) •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
	휴일	100,000	50,000	150,000	
체육활동	평일	100,000	35,000	70,000	
	휴일	150,000	50,000	86,000	
일반행사	평일	150,000	75,000	225,000	
	휴일	200,000	100,000	300,000	
육상경기	평일	40,000	20,000	60,000	
	휴일	50,000	25,000	75,000	

## 실내체육관 (강남체육관, 주문진실내체육관, 강릉아레나)

(금액 : 원)

구분 \ 분류		사 용 료					
		강남체육관, 주문진실내체육관			강릉아레나		
		1일	오전·오후	조기/야간	1일	오전·오후	조기/야간
체육경기	평일	65,000	33,000	98,000	150,000	75,000	112,500
	휴일	90,000	45,000	135,000	200,000	100,000	150,000
체육활동	평일	90,000	45,000	135,000	400,000	200,000	300,000
	휴일	155,000	77,000	232,000	520,000	260,000	390,000
일반행사	평일	170,000	85,000	255,000	550,000	275,000	412,500
	휴일	200,000	100,000	300,000	720,000	360,000	540,000

## 국민체육센터(강남체육관) - 스쿼시장

(금액 : 원)

구분		사 용 료				운 영 기 준
		1일	오전	오후	조기/야간	
스쿼시장	경기	45,000	15,000	30,000	67,500	• 1코트 기준
	이 용 료					
	구분	월회원	일일입장	강습료		
				주2회	주3회	
	금액	70,000	5,000	30,000	50,000	• 1일 입장 기준 : 1인 1시간
	대 여 료					
	구분	스쿼시화		라켓		
1,000		2,000				

##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금액 : 원)

구분 \ 분류	이 용 료						운 영 기 준
	월 회 원				1일 입장		
	강습반			자 유 영 수 영	개 인	단 체	
	주4일	주3일	주2일				
어른	60,000	57,500	55,000	50,000	3,500	3,000	· 1일 1회 2시간 기준
군인·청소년	50,000	47,500	45,000	40,000	2,500	2,000	
경로·어린이	45,000	42,500	40,000	35,000	2,000	1,500	

## 국민체육센터(볼링장)

(금액 : 원)

구분 \ 분류	이 용 료					운 영 기 준
	어른	청소년	회원	볼링화대여		
17시까지	3,000	2,000	2,500	1회/ 1,000	· 1인 1게임(2시간) 기준	
17시부터	3,500	2,500	3,000			
구분 \ 분류	사 용 료				운 영 기 준	
	1일	오전·오후	조기/야간			
볼링경기	900,000	450,000	1,170,000	· 20개 레인 8시간 기준		
체육활동	900,000	450,000	1,170,000			

## 실내게이트볼장

(금액 : 원)

구분 \ 단위	사 용 료			운 영 기 준	
	1일	오전·오후	조기/야간		
경 기	평일	30,000	15,000	45,000	
	휴일	40,000	20,000	60,000	
연습사용	이 용 료			· 1면당 1회 1게임(2시간) 기준	
	개 인		단 체		
	500		10,000		

## 생활체육센터

(금액 : 원)

구분	분류	이 용 료			운 영 기 준
		월회원	일일입장	단 체	
탁구장	어른	25,000	3,000	2,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일입장 기준</li> <li>- 1회 2시간</li> </ul>
	군인·청소년	23,000	2,500	2,000	
	경로·어린이	20,000	2,000	1,500	
		사 용 료			
	구분	1일	오전·오후	조기/야간	
		130,000	65,000	169,000	
배드민턴장		이 용 료			
	구 분	월회원	일일입장	단 체	
	어른	20,000	2,000	1,500	
	군인·청소년	17,000	1,500	1,000	
	경로·어린이	15,000	1,000	700	
		사 용 료			
구분	1일	오전·오후	조기/야간		
	260,000	130,000	338,000		
유도훈련장		무료			
태권도훈련장		무료			

## 월드구장

(금액 : 원)

구분	단위	사 용 료			운 영 기 준
		1일	오전·오후	조기/야간	
축구경기 (천연잔디)	평일	200,000	-	3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 1게임(2시간) 기준</li> <li>•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li> <li>-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li> </ul>
	휴일	300,000	-	450,000	

## 야구장

(금액 : 원)

구분	단위	사 용 료			운 영 기 준
		1일	오전·오후	조기/야간	
경 기	평일	70,000	50,000	10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 1게임(2시간) 기준</li> <li>•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li> <li>-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li> </ul>
	휴일	100,000	75,000	150,000	
• 성인/리틀구장 동일 적용					

## 실내종합체육관(빙상장)

(금액 : 원)

구분 \ 단위		이 용 료				운 영 기 준
		어린이	청소년	어른		
정기사용	1일1회	2,000	2,500	3,000		· 이용시간 : 09시 ~ 22시
	1개월	40,000	50,000	60,000		
	3개월	110,000	140,000	160,000		
구분 \ 단위		사 용 료				
		조기	오전	오후	야간	
평일		70,000	250,000	300,000	220,000	· 1회 1시간 기준(정빙시간 포함) · 체육목적 외 사용 시 30% 가산
휴일		90,000	300,000	360,000	260,000	
장비 대여 및 날갈이 요금						
요금		대 여		날 갈 이		· 신발대여 : 2시간 기준 · 초과30분 당 700원
		신발	스피드	피겨·하키	신품	
		2,500	2,000	2,500	3,000	

## 실내종합체육관(컬링장)

(금액 : 원)

구분 \ 단위		이 용 료		운 영 기 준
		08:00~20:00	20:00~22:00	
평일		80,000	70,000	· 1시트 1시간 기준 · 이용시간 : 08시 ~ 22시 · 제한인원 : 1시트 당 10명
휴일		100,000	80,000	
구분 \ 단위		체 험 료		운 영 기 준
		컬링체험		

## 공도장

(금액 : 원)

구분 \ 단위		사 용 료			운 영 기 준
		1일	오전·오후	조기/야간	
경 기	평일	70,000	35,000	105,000	
	휴일	80,000	40,000	120,000	
연습사용		이 용 료			· 1회 1게임(2시간) 기준
		개 인		단 체	
		1,000		13,000	

## 테니스장

(금액 : 원)

구분 \ 단위		사 용 료			운 영 기 준
		1일	오전·오후	조기/야간	
경 기	평일	20,000	10,000	30,000	• 테니스 코트는 1면당 적용(1게임기준) • 단체 : 4명기준
	휴일	25,000	12,500	37,500	
체육활동	평일	40,000	20,000	60,000	
	휴일	50,000	25,000	75,000	
연습사용		이 용 료			
		개 인		단 체	
		월액	2시간	2시간	
		30,000	3,000	10,000	

## 우드볼장

(금액 : 원)

구분 \ 단위		사 용 료		운 영 기 준
경기		50,000		
기타행사		75,000		
구분 \ 단위		이 용 료		• 1회 1게임(2시간) 기준 • 1면 기준
연 습 사 용	어른	3,000		
	학생·군인·청소년	2,000		
	어린이	1,500		

## 기타 체육시설

구분 \ 단위	1일	오전	오후	조기/야간	운 영 기 준
	실내롤러스케이트장, 야외롤러스케이트장, 풋살장, 족구장, 펌프트랙	무료			

# 부대시설 사용료

(금액 : 원)

구 분	단위	사용료	비 고
전기요금	1일	관허요금	월 기본료(kw당)×1/30일+사용전력량요금(kwh)당
음향시설	1회	40,000	
마이크	1개	7,000	
냉.난방료	1회	관허요금 (실비)	연료비 가격의 10% 가산
조명	종합경기장	시간/일	관허요금 기본료(50,000원)+ [월 기본요금 (kw당×1/30일×1/24+사용전력량요금(kw당))]
	강남축구공원	시간	15,000
전광판	종합경기장	1회	관허요금 기본료(20,000원)+ [월 기본요금 (kw당×1/30일×1/24+사용전력량요금(kw당))]
	강남축구공원	1회	10,000
농구대 대여	1회 1조	13,000	
배구지주대 대여	1회 1조	7,000	
핸드볼골대 대여	1회 1조	7,000	
후로닝 카 바	실내종합체육관	1일	50,000
	주문진실내체육관	1일	35,000
	강남체육관	1일	3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분의 1이상 : 전액</li> <li>•2분의 1미만 : 반액</li> </ul>
샤워장	1회	무료	
트레이닝장	1회	무료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시간 1시간미만 은 1시간 적용</li> </ul>		

## 중계방송료

(금액 : 원)

종별	구분	단위	중계방송료			비 고
			TV	인터넷	라디오	
체육경기 및 체육활동	국제	1회	65,000	40,000	30,000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중계 방송료는 1게임당 적용금액임.
	국내	1회	25,000	20,000	15,000	
일 반 행 사	국제	1회	65,000	40,000	25,000	
	국내	1회	25,000	20,000	15,000	
TV 녹화		1회	TV중계 방송료의 반액			
라디오 녹음		1회	라디오중계 방송료의 반액			

## 기타 사용료

(금액 : 원)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 고
매 점	1일1개소	40,000	
프로그램 판매	판매부수*1부당가격	판매량의 20%	
선전 또는 광고물 게시 진열	월액(면적당)	·1등급 : 6,500 ·2등급 : 4,500 ·3등급 : 2,500	· 15일 미만은 반월로 ·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 1㎡ 미만은 1㎡로 한다.
에드벌룬 및 유사물의 공간게양	1일1개	4,000	
영화촬영	주간	30,000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야간	40,000	
현수막 게양	1일1개	1,500	
○ 선전 광고물 등급 : 1등급 가로 * 세로 20㎡ 이상 2등급 가로 * 세로 7㎡ 이상 3등급 가로 * 세로 7㎡ 미만			

[별표 4]

## 체육시설 초과사용료 (제15조 관련)

구 분	초과사용료	비 고
연습사용 외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연습 사용 시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50% 가산	



[별표 5]

## 사용료의 감면 (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	감액률(할인율)	비 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도 단위 이상의 대회 출전선수를 위한 14일 이내 훈련	80퍼센트	
강릉도·시 대표선수단의 14일 이내 훈련	"	
강릉시민축구단, 강원FC의 훈련계획에 따른 훈련 및 다른 구단과의 축구 경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경기 및 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강릉시체육회 가맹 및 등록단체의 장, 강릉시의회 의장, 협회(연합회)의 장기대회(연 1회)	"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시가 후원하는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	
강릉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및 경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경기·행사	50퍼센트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위한 경기·행사 (단, 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달부터 적용함)	"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행사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학교의 체육행사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어린이집의 체육행사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행사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퍼센트	

## 이용료의 감면 (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	감액률(할인율)	비 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30퍼센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강릉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세자녀 이상 가정의 구성원	"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월회원 중 청소년 및 성인에 해당하는 여성	10퍼센트	





[별지 제3호서식]

허가번호 : 제20 - 호

##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귀하

귀 하(귀 단체)의 체육시설( )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사용허가내용	기본시설 : 부대시설 :
사용목적(내용)	
허 가 기 간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 일간 )
공연, 행사회수	회
사 용 료	금 (₩ ) 기본시설 : (₩ ) 부대설비사용료 : (₩ )
기 타	

- 조건 : 1.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료는 지정기일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용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0 년 월 일

# 강릉시장





